힐스테이트 감삼 센트럴 입주자모집공고

힐스테이트

■ 본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유의사기 바라며, 미숙지로 인한 착오항의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및 계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고 당첨되어 선정되거나 계약을 체결한 이후라도 관계법령 및 공급규칙 적격 여부에 따라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
■ 프로그래머리스공원등 - 19 관련 건설현장 공정 안내사항

- 힐스테이트 감삼 센트럴은 신흥 주거벨트 중심 핵심지역 위치에 사이버 보안부지스 관련한 특별지구를 위치해 사이버 보안부지스 (http://www.gamsam-central.co.kr) 대학교의 공공형 예정입니다.
- 단, 보안부지스 공공개발지구 바탕 사이버는 홈페이지에 고지할 예정이오니 반드시 홈페이지 확인 바라며, 보안부지스로 변경되는 경우 해당 계약자에 한하여 계약해지 가능합니다.
- 건설현장 공공시설 부지 이외에 정상적인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 대해서만 공공시설 개방 및 공사가 진행되오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.
- 단, 당첨자 발표 후 세대배정 기간 및 계약기간 내 당첨자에게 입주자에 관한 공지 및 안내를 개별 연락드리며 이를 미이행 시 당첨자는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- 현장 공정 개선사항 등을 사전 공지 없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불편 및 손해에 대해 시행사는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한 이의 제기 및 민원 접수 불가하오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.
- 건설현장 방문 시 안전모 등 안전장비 착용 및 안전수칙 준수하시기 바랍니다.
- 현장 방문 시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한 책임은 방문자 본인에게 있으며 시행사는 이에 대해 일체 책임지지 않습니다.

■ 공급대상 및 면적

- 주거전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포함한 면적이며, 세부도 주거전용면적 및 주거공용면적은 전용면적 입주자모집 공고 기준 이후 준공시 기준 변경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- 주거공용면적 : 계단, 복도, 현관 등 주거공용 목적으로 사용되는 면적
- 주거전용면적 : 현관문 안쪽 면적 (발코니 면적 제외)
- 사실혼 대상자분은 공동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으며 해당되는 경우에는 입주자모집 공고 이후 세대원 변경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- 사실혼 관계 증명 : 주민등록등본 상 동일 세대 등재 및 혼인관계증명서 상 미혼 확인 등 사실혼 관계 증명 가능한 서류 일체
- 사실혼 관계 증명 불가 : 주민등록등본 상 세대 분리 및 혼인관계증명서 상 기혼 확인 등 사실혼 관계 증명 불가한 서류 일체
- 본 아파트는 2020.06.29. 개정된 주택공급규칙 관련 규칙 개정 적용.
- 본 아파트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2021.10.12.일 현재 주택법 및 주택공급규칙 관련 개정된 사항 중 1년 이내 분양권 전매 제한 적용.
- 본 아파트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2021.10.12.일 현재 주택법 및 주택공급규칙 관련 개정된 사항 중 1년 이내 거주의무 적용.
- 본 아파트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으로 상기 분양권 전매 및 거주의무 제한사항 이외 입주권에 적용되지 않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- 본 아파트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으로 상기 분양권 전매 및 거주의무 제한사항 이외 조합원에 적용되지 않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- 본 아파트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으로 상기 분양권 전매 및 거주의무 제한사항 이외 조합원 지위 양도 및 양수 제한 사항에 적용되지 않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- 분양권 및 입주권 전매 제한 : 주택법 시행령 제7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 : 1년 이내 전매 제한
- 분양권 및 입주권 전매 제한 : 주택법 시행령 제73조 제1항 제1호 다목 : 3년 이내 전매 제한
- 본 아파트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규칙 제2조 제1호 가목 및 나목 : 1년 이내 거주의무 적용
- 본 아파트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규칙 제2조 제1호 다목 : 3년 이내 거주의무 적용
- 본 아파트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규칙 제2조 제1호 라목 : 5년 이내 거주의무 적용
- 본 아파트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규칙 제2조 제1호 마목 : 8년 이내 거주의무 적용
- 본 아파트는 2020.06.29. 개정된 주택공급규칙 관련 규칙 개정 적용.
- 본 아파트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2021.10.12.일 현재 주택법 및 주택공급규칙 관련 개정된 사항 중 1년 이내 거주의무 적용
- 본 아파트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2021.10.12.일 현재 주택법 및 주택공급규칙 관련 개정된 사항 중 1년 이내 전매 제한 적용
- 본 아파트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으로 상기 분양권 전매 및 거주의무 제한사항 이외 조합원 지위 양도 및 양수 제한 사항에 적용되지 않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- 본 아파트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으로 상기 분양권 전매 및 거주의무 제한사항 이외 조합원에 적용되지 않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- 분양권 및 입주권 전매 제한 : 주택법 시행령 제7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 : 1년 이내 전매 제한
- 분양권 및 입주권 전매 제한 : 주택법 시행령 제73조 제1항 제1호 다목 : 3년 이내 전매 제한
- 본 아파트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규칙 제2조 제1호 가목 및 나목 : 1년 이내 거주의무 적용
- 본 아파트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규칙 제2조 제1호 다목 : 3년 이내 거주의무 적용
- 본 아파트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규칙 제2조 제1호 라목 : 5년 이내 거주의무 적용
- 본 아파트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규칙 제2조 제1호 마목 : 8년 이내 거주의무 적용

■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- 전용 85㎡ 이하 주택 2개일정 20% 범위 공급(38세대)

구분	주택형	일반	추가	신청자격	당첨자 선정방법
신혼부부 우선공급 (기존소득기준)	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	100% 이하		① 신혼부부	① 주민등록등본 등 소명자료에 의한 전산추첨
	배우자가 소득이 없는 경우	120% 이하		② 주민등록등본 등 소명자료에 의한 전산추첨	② 주민등록등본 등 소명자료에 의한 전산추첨
신혼부부 일반공급 (상위소득기준)	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	100%초과~120%이하		③ 혼인관계증명서 등 소명자료에 의한 전산추첨	③ 혼인관계증명서 등 소명자료에 의한 전산추첨
	배우자가 소득이 없는 경우	120%초과~130%이하		④ 혼인관계증명서 등 소명자료 → 가점기준	④ 혼인관계증명서 등 소명자료 → 가점기준
	상위 하위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	100%초과~130%이하		⑤ 혼인관계증명서 등 소명자료 → 가점기준	⑤ 혼인관계증명서 등 소명자료 → 가점기준
	상위 하위 모두 소득이 없는 경우	120%초과~140%이하		⑥ 혼인관계증명서 등 소명자료 → 가점기준	⑥ 혼인관계증명서 등 소명자료 → 가점기준

- 기준소득 : 신혼부부 우선공급 기준소득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% 이하, 신혼부부 일반공급 기준소득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%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, 부부 중 1인 소득이 월평균 소득기준 100%초과시 일반공급 2순위로 접수 가능하며 이때 일반공급 2순위 접수 시 일반공급 1순위 접수 불가합니다.
- 상위소득 : 신혼부부 우선공급 기준소득 이하 이면서 일반공급 기준소득 이하 이면 상위소득 이하 주택형에 한하여 신청 가능하며 이때 주택형 생애최초 구입자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20%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.
- 2020.07.29. 개정된 주택공급규칙 관련 규칙 개정 적용 :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 100% 이하 주택형 생애최초 구입자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 100%초과시 일반공급 2순위로 접수 가능하며 이때 일반공급 2순위 접수 시 일반공급 1순위 접수 불가합니다.
- 상위소득 : 신혼부부 우선공급 기준소득 이하 이면서 일반공급 기준소득 이하 이면 상위소득 이하 주택형에 한하여 신청 가능하며 이때 주택형 생애최초 구입자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20%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.
- 2020.07.29. 개정된 주택공급규칙 관련 규칙 개정 적용 :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 100% 이하 주택형 생애최초 구입자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 100%초과시 일반공급 2순위로 접수 가능하며 이때 일반공급 2순위 접수 시 일반공급 1순위 접수 불가합니다.
- 상위소득 : 신혼부부 우선공급 기준소득 이하 이면서 일반공급 기준소득 이하 이면 상위소득 이하 주택형에 한하여 신청 가능하며 이때 주택형 생애최초 구입자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20%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.
-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: 전용 85㎡ 이하 주택 2개일정 20% 범위 공급(38세대)

순위	신청자격	배점기준
1순위	85㎡ 이하	① 가점제 70%, 추첨제 30% 비율로 당첨자를 선정하며, 가점제 부여기준 : ① 청약가점 : 무주택기간 가점 : 무주택기간 가점은 만 30세 이상 기준 무주택기간 가점 : 무주택기간 가점은 만 30세 이전 미혼 무주택자는 만 30세 이전 무주택기간 가점 : 무주택기간 가점은 혼인 신고일 이후 무주택기간 가점 : 무주택기간 가점은 혼인 신고일 이전 미혼 무주택자는 혼인 신고일 이전 무주택기간 가점 : 무주택기간 가점은 만 18세 이전 무주택기간 가점 : 무주택기간 가점은 만 18세 이전 미혼 무주택자는 만 18세 이전 ② 부양가족수 가점 : 부양가족 가점은 본인 포함 최대 6명 기준 ③ 추첨제 : 가점제 기준 동점자 발생 시 추첨제 적용 ④ 가점제 기준 동점자 발생 시 추첨제 적용 ⑤ 가점제 기준 동점자 발생 시 추첨제 적용 ⑥ 가점제 기준 동점자 발생 시 추첨제 적용
2순위	85㎡ 초과	① 청약저축 : 청약저축 가입기간 6개월 이상 가점제 기준 충족 ② 주택소유 : 주택 소유 여부 무관 ③ 추첨제 : 가점제 기준 동점자 발생 시 추첨제 적용 ④ 가점제 기준 동점자 발생 시 추첨제 적용 ⑤ 가점제 기준 동점자 발생 시 추첨제 적용 ⑥ 가점제 기준 동점자 발생 시 추첨제 적용

■ 일반공급 청약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- 전용 85㎡ 이하 주택 2개일정 70% 범위 공급(134세대)

순위	신청자격	신청자격
1순위	85㎡ 이하	① 가점제 75%, 추첨제 25% 비율로 당첨자를 선정하며, 가점제 부여기준 : ① 청약가점 : 무주택기간 가점 : 무주택기간 가점은 만 30세 이상 기준 무주택기간 가점 : 무주택기간 가점은 혼인 신고일 이후 무주택기간 가점 : 무주택기간 가점은 혼인 신고일 이전 미혼 무주택자는 혼인 신고일 이전 무주택기간 가점 : 무주택기간 가점은 만 18세 이전 무주택기간 가점 : 무주택기간 가점은 만 18세 이전 미혼 무주택자는 만 18세 이전 ② 부양가족수 가점 : 부양가족 가점은 본인 포함 최대 6명 기준 ③ 추첨제 : 가점제 기준 동점자 발생 시 추첨제 적용 ④ 가점제 기준 동점자 발생 시 추첨제 적용 ⑤ 가점제 기준 동점자 발생 시 추첨제 적용 ⑥ 가점제 기준 동점자 발생 시 추첨제 적용
2순위	85㎡ 초과	① 청약저축 : 청약저축 가입기간 6개월 이상 가점제 기준 충족 ② 주택소유 : 주택 소유 여부 무관 ③ 추첨제 : 가점제 기준 동점자 발생 시 추첨제 적용 ④ 가점제 기준 동점자 발생 시 추첨제 적용 ⑤ 가점제 기준 동점자 발생 시 추첨제 적용 ⑥ 가점제 기준 동점자 발생 시 추첨제 적용

■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- 전용 85㎡ 이하 주택 2개일정 20% 범위 공급(38세대)

구분	주택형	일반	추가	신청자격	당첨자 선정방법
생애최초 특별공급	130% 이하			① 신청자 본인 및 배우자 모두 주택 등 소유하지 않은 경우 ② 청약저축 가입기간 5년 이상 납입횟수 24회 이상 ③ 세대원 전원 과거 5년 이내 주택 등 소유 이력 없는 경우	① 주민등록등본 등 소명자료에 의한 전산추첨

■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- 전용 85㎡ 이하 주택 2개일정 3% 범위 공급(104세대)

구분	주택형	일반	추가	신청자격	당첨자 선정방법
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	130% 이하			① 신청자 본인 및 배우자 모두 주택 등 소유하지 않은 경우 ② 청약저축 가입기간 5년 이상 납입횟수 24회 이상 ③ 세대원 전원 과거 5년 이내 주택 등 소유 이력 없는 경우 ④ 부양가족 :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 (배우자 포함) 중 1명 이상 부양하는 경우	① 주민등록등본 등 소명자료에 의한 전산추첨

■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- 전용 85㎡ 이하 주택 2개일정 20% 범위 공급(38세대)

구분	주택형	일반	추가	신청자격	당첨자 선정방법
신혼부부 우선공급 (기존소득기준)	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	100% 이하		① 신혼부부	① 주민등록등본 등 소명자료에 의한 전산추첨
	배우자가 소득이 없는 경우	120% 이하		② 주민등록등본 등 소명자료에 의한 전산추첨	② 주민등록등본 등 소명자료에 의한 전산추첨
신혼부부 일반공급 (상위소득기준)	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	100%초과~120%이하		③ 혼인관계증명서 등 소명자료에 의한 전산추첨	③ 혼인관계증명서 등 소명자료에 의한 전산추첨
	배우자가 소득이 없는 경우	120%초과~130%이하		④ 혼인관계증명서 등 소명자료 → 가점기준	④ 혼인관계증명서 등 소명자료 → 가점기준
	상위 하위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	100%초과~130%이하		⑤ 혼인관계증명서 등 소명자료 → 가점기준	⑤ 혼인관계증명서 등 소명자료 → 가점기준
	상위 하위 모두 소득이 없는 경우	120%초과~140%이하		⑥ 혼인관계증명서 등 소명자료 → 가점기준	⑥ 혼인관계증명서 등 소명자료 → 가점기준

- 기준소득 : 신혼부부 우선공급 기준소득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% 이하, 신혼부부 일반공급 기준소득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%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, 부부 중 1인 소득이 월평균 소득기준 100%초과시 일반공급 2순위로 접수 가능하며 이때 일반공급 2순위 접수 시 일반공급 1순위 접수 불가합니다.
- 상위소득 : 신혼부부 우선공급 기준소득 이하 이면서 일반공급 기준소득 이하 이면 상위소득 이하 주택형에 한하여 신청 가능하며 이때 주택형 생애최초 구입자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20%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.
- 2020.07.29. 개정된 주택공급규칙 관련 규칙 개정 적용 :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 100% 이하 주택형 생애최초 구입자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 100%초과시 일반공급 2순위로 접수 가능하며 이때 일반공급 2순위 접수 시 일반공급 1순위 접수 불가합니다.
- 상위소득 : 신혼부부 우선공급 기준소득 이하 이면서 일반공급 기준소득 이하 이면 상위소득 이하 주택형에 한하여 신청 가능하며 이때 주택형 생애최초 구입자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20%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.
-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- 전용 85㎡ 이하 주택 2개일정 3% 범위 공급(104세대)

구분	주택형	일반	추가	신청자격	당첨자 선정방법
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	130% 이하			① 신청자 본인 및 배우자 모두 주택 등 소유하지 않은 경우 ② 청약저축 가입기간 5년 이상 납입횟수 24회 이상 ③ 세대원 전원 과거 5년 이내 주택 등 소유 이력 없는 경우 ④ 부양가족 :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 (배우자 포함) 중 1명 이상 부양하는 경우	① 주민등록등본 등 소명자료에 의한 전산추첨

■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- 전용 85㎡ 이하 주택 2개일정 10% 범위 공급(35세대)

구분	주택형	일반	추가	신청자격	당첨자 선정방법
다자녀가구 특별공급	130% 이하			① 신청자 본인 및 배우자 모두 주택 등 소유하지 않은 경우 ② 청약저축 가입기간 5년 이상 납입횟수 24회 이상 ③ 세대원 전원 과거 5년 이내 주택 등 소유 이력 없는 경우 ④ 미성년 자녀 : 만 19세 이상 직계존속 (배우자 포함) 중 1명 이상 부양하는 경우	① 주민등록등본 등 소명자료에 의한 전산추첨

■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- 전용 85㎡ 이하 주택 2개일정 20% 범위 공급(38세대)

구분	주택형	일반	추가	신청자격	당첨자 선정방법
신혼부부 우선공급 (기존소득기준)	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	100% 이하		① 신청자 본인 및 배우자 모두 주택 등 소유하지 않은 경우 ② 혼인관계 : 혼인 중인 경우 ③ 혼인기간 : 혼인 후 7년 이내	① 주민등록등본 등 소명자료에 의한 전산추첨
	배우자가 소득이 없는 경우	120% 이하		④ 혼인관계증명서 등 소명자료 → 가점기준	④ 혼인관계증명서 등 소명자료 → 가점기준
신혼부부 일반공급 (상위소득기준)	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	100%초과~120%이하		⑤ 혼인관계증명서 등 소명자료 → 가점기준	⑤ 혼인관계증명서 등 소명자료 → 가점기준
	배우자가 소득이 없는 경우	120%초과~130%이하		⑥ 혼인관계증명서 등 소명자료 → 가점기준	⑥ 혼인관계증명서 등 소명자료 → 가점기준
	상위 하위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	100%초과~130%이하		⑦ 혼인관계증명서 등 소명자료 → 가점기준	⑦ 혼인관계증명서 등 소명자료 → 가점기준
	상위 하위 모두 소득이 없는 경우	120%초과~140%이하		⑧ 혼인관계증명서 등 소명자료 → 가점기준	⑧ 혼인관계증명서 등 소명자료 → 가점기준

- 기준소득 : 신혼부부 우선공급 기준소득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% 이하, 신혼부부 일반공급 기준소득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%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, 부부 중 1인 소득이 월평균 소득기준 100%초과시 일반공급 2순위로 접수 가능하며 이때 일반공급 2순위 접수 시 일반공급 1순위 접수 불가합니다.
- 상위소득 : 신혼부부 우선공급 기준소득 이하 이면서 일반공급 기준소득 이하 이면 상위소득 이하 주택형에 한하여 신청 가능하며 이때 주택형 생애최초 구입자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20%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.
- 2020.07.29. 개정된 주택공급규칙 관련 규칙 개정 적용 :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 100% 이하 주택형 생애최초 구입자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 100%초과시 일반공급 2순위로 접수 가능하며 이때 일반공급 2순위 접수 시 일반공급 1순위 접수 불가합니다.
- 상위소득 : 신혼부부 우선공급 기준소득 이하 이면서 일반공급 기준소득 이하 이면 상위소득 이하 주택형에 한하여 신청 가능하며 이때 주택형 생애최초 구입자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20%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.
-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- 전용 85㎡ 이하 주택 2개일정 3% 범위 공급(104세대)

구분	주택형	일반	추가	신청자격	당첨자 선정방법
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	130% 이하			① 신청자 본인 및 배우자 모두 주택 등 소유하지 않은 경우 ② 청약저축 가입기간 5년 이상 납입횟수 24회 이상 ③ 세대원 전원 과거 5년 이내 주택 등 소유 이력 없는 경우 ④ 부양가족 :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 (배우자 포함) 중 1명 이상 부양하는 경우	① 주민등록등본 등 소명자료에 의한 전산추첨

■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- 전용 85㎡ 이하 주택 2개일정 10% 범위 공급(35세대)

구분	주택형	일반	추가	신청자격	당첨자 선정방법
다자녀가구 특별공급	130% 이하			① 신청자 본인 및 배우자 모두 주택 등 소유하지 않은 경우 ② 청약저축 가입기간 5년 이상 납입횟수 24회 이상 ③ 세대원 전원 과거 5년 이내 주택 등 소유 이력 없는 경우 ④ 미성년 자녀 : 만 19세 이상 직계존속 (배우자 포함) 중 1명 이상 부양하는 경우	① 주민등록등본 등 소명자료에 의한 전산추첨

■ 일반공급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방법 및 공급 순위

순위	신청자격	신청자격
1순위	85㎡ 이하	① 가점제 75%, 추첨제 25% 비율로 당첨자를 선정하며, 가점제 부여기준 : ① 청약가점 : 무주택기간 가점 : 무주택기간 가점은 만 30세 이상 기준 무주택기간 가점 : 무주택기간 가점은 혼인 신고일 이후 무주택기간 가점 : 무주택기간 가점은 혼인 신고일 이전 미혼 무주택자는 혼인 신고일 이전 무주택기간 가점 : 무주택기간 가점은 만 18세 이전 무주택기간 가점 : 무주택기간 가점은 만 18세 이전 미혼 무주택자는 만 18세 이전 ② 부양가족수 가점 : 부양가족 가점은 본인 포함 최대 6명 기준 ③ 추첨제 : 가점제 기준 동점자 발생 시 추첨제 적용 ④ 가점제 기준 동점자 발생 시 추첨제 적용 ⑤ 가점제 기준 동점자 발생 시 추첨제 적용 ⑥ 가점제 기준 동점자 발생 시 추첨제 적용
2순위	85㎡ 초과	① 청약저축 : 청약저축 가입기간 6개월 이상 가점제 기준 충족 ② 주택소유 : 주택 소유 여부 무관 ③ 추첨제 : 가점제 기준 동점자 발생 시 추첨제 적용 ④ 가점제 기준 동점자 발생 시 추첨제 적용 ⑤ 가점제 기준 동점자 발생 시 추첨제 적용 ⑥ 가점제 기준 동점자 발생 시 추첨제 적용

■ 당첨자 가점제 적용 기준(주택공급에 관한 규칙, 별표1 3)

구분	내용
무주택기간 적용기준	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원 모두 주택 등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 :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 30세 이상인 경우 경우 무주택기간 가점 : 만 30세 이후 혼인신고일 경우 : 혼인신고일 이후 무주택기간 가점 : 혼인신고일 이전 미혼 무주택자는 만 30세 이전 무주택기간 가점 : 만 18세 이후 무주택기간 가점 : 만 18세 이전 미혼 무주택자는 만 18세 이전 ② 주택공급신청자 및 그 배우자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 : 주택공급신청자 및 그 배우자 모두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 : 주택공급신청자 및 그 배우자 모두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 ③ 주택공급신청자 및 그 배우자 모두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 : 주택공급신청자 및 그 배우자 모두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

■ 일반공급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방법 및 공급 순위

구분	내용
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방법	① 가점제 70%, 추첨제 30% 비율로 당첨자를 선정하며, 가점제 부여기준 : ① 청약가점 : 무주택기간 가점 : 무주택기간 가점은 만 30세 이상 기준 무주택기간 가점 : 무주택기간 가점은 혼인 신고일 이후 무주택기간 가점 : 무주택기간 가점은 혼인 신고일 이전 미혼 무주택자는 혼인 신고일 이전 무주택기간 가점 : 무주택기간 가점은 만 18세 이전 무주택기간 가점 : 무주택기간 가점은 만 18세 이전 미혼 무주택자는 만 18세 이전 ② 부양가족수 가점 : 부양가족 가점은 본인 포함 최대 6명 기준 ③ 추첨제 : 가점제 기준 동점자 발생 시 추첨제 적용 ④ 가점제 기준 동점자 발생 시 추첨제 적용 ⑤ 가점제 기준 동점자 발생 시 추첨제 적용 ⑥ 가점제 기준 동점자 발생 시 추첨제 적용

■ 공급대상 및 면적

- 주거전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포함한 면적이며, 세부도 주거전용면적 및 주거공용면적은 전용면적 입주자모집 공고 기준 이후 준공시 기준 변경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- 주거공용면적 : 계단, 복도, 현관 등 주거공용 목적으로 사용되는 면적
- 주거전용면적 : 현관문 안쪽 면적 (발코니 면적 제외)
- 사실혼 대상자분은 공동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으며 해당되는 경우에는 입주자모집 공고 이후 세대원 변경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- 사실혼 관계 증명 : 주민등록등본 상 동일 세대 등재 및 혼인관계증명서 상 미혼 확인 등 사실혼 관계 증명 가능한 서류 일체
- 사실혼 관계 증명 불가 : 주민등록등본 상 세대 분리 및 혼인관계증명서 상 기혼 확인 등 사실혼 관계 증명 불가한 서류 일체
- 본 아파트는 2020.06.29. 개정된 주택공급규칙 관련 규칙 개정 적용.
- 본 아파트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2021.10.12.일 현재 주택법 및 주택공급규칙 관련 개정된 사항 중 1년 이내 거주의무 적용
- 본 아파트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2021.10.12.일 현재 주택법 및 주택공급규칙 관련 개정된 사항 중 1년 이내 전매 제한 적용
- 본 아파트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으로 상기 분양권 전매 및 거주의무 제한사항 이외 입주권에 적용되지 않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- 본 아파트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으로 상기 분양권 전매 및 거주의무 제한사항 이외 조합원 지위 양도 및 양수 제한 사항에 적용되지 않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- 분양권 및 입주권 전매 제한 : 주택법 시행령 제7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 : 1년 이내 전매 제한
- 분양권 및 입주권 전매 제한 : 주택법 시행령 제73조 제1항 제1호 다목 : 3년 이내 전매 제한
- 본 아파트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규칙 제2조 제1호 가목 및 나목 : 1년 이내 거주의무 적용
- 본 아파트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규칙 제2조 제1호 다목 : 3년 이내 거주의무 적용
- 본 아파트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규칙 제2조 제1호 라목 : 5년 이내 거주의무 적용
- 본 아파트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규칙 제2조 제1호 마목 : 8년 이내 거주의무 적용
- 본 아파트는 2020.06.29. 개정된 주택공급규칙 관련 규칙 개정 적용.
- 본 아파트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2021.10.12.일 현재 주택법 및 주택공급규칙 관련 개정된 사항 중 1년 이내 거주의무 적용
- 본 아파트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2021.10.12.일 현재 주택법 및 주택공급규칙 관련 개정된 사항 중 1년 이내 전매 제한 적용
- 본 아파트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으로 상기 분양권 전매 및 거주의무 제한사항 이외 조합에 적용되지 않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- 분양권 및 입주권 전매 제한 : 주택법 시행령 제7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 : 1년 이내 전매 제한
- 분양권 및 입주권 전매 제한 : 주택법 시행령 제73조 제1항 제1호 다목 : 3년 이내 전매 제한
- 본 아파트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규칙 제2조 제1호 가목 및 나목 : 1년 이내 거주의무 적용
- 본 아파트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규칙 제2조 제1호 다목 : 3년 이내 거주의무 적용
- 본 아파트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규칙 제2조 제1호 라목 : 5년 이내 거주의무 적용
- 본 아파트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규칙 제2조 제1호 마목 : 8년 이내 거주의무 적용

■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- 전용 85㎡ 이하 주택 2개일정 7% 범위 공급(12세대)

구분	주택형	일반	추가	신청자격	당첨자 선정방법
생애최초 특별공급	130% 이하			① 신청자 본인 및 배우자 모두 주택 등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 ② 청약저축 가입기간 5년 이상 납입횟수 24회 이상 ③ 세대원 전원 과거 5년 이내 주택 등 소유 이력 없는 경우	① 주민등록등본 등 소명자료에 의한 전산추첨

■ 일반공급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방법 및 공급 순위

구분	신청자격	신청자격
1순위	85㎡ 이하	① 가점제 75%, 추첨제 25% 비율로 당첨자를 선정하며, 가점제 부여기준 : ① 청약가점 : 무주택기간 가점 : 무주택기간 가점은 만 30세 이상 기준 무주택기간 가점 : 무주택기간 가점은 혼인 신고일 이후 무주택기간 가점 : 무주택기간 가점은 혼인 신고일 이전 미혼 무주택자는 혼인 신고일 이전 무주택기간 가점 : 무주택기간 가점은 만 18세 이전 무주택기간 가점 : 무주택기간 가점은 만 18세 이전 미혼 무주택자는 만 18세 이전 ② 부양가족수 가점 : 부양가족 가점은 본인 포함 최대 6명 기준 ③ 추첨제 : 가점제 기준 동점자 발생 시 추첨제 적용 ④ 가점제 기준 동점자 발생 시 추첨제 적용 ⑤ 가점제 기준 동점자 발생 시 추첨제 적용 ⑥ 가점제 기준 동점자 발생 시 추첨제 적용
2순위	85㎡ 초과	① 청약저축 : 청약저축 가입기간 6개월 이상 가점제 기준 충족 ② 주택소유 : 주택 소유 여부 무관 ③ 추첨제 : 가점제 기준 동점자 발생 시 추첨제 적용 ④ 가점제 기준 동점자 발생 시 추첨제 적용 ⑤ 가점제 기준 동점자 발생 시 추첨제 적용 ⑥ 가점제 기준 동점자 발생 시 추첨제 적용

■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- 전용 85㎡ 이하 주택 2개일정 20% 범위 공급(38세대)

구분	주택형	일반	추가	신청자격	당첨자 선정방법
신혼부부 우선공급 (기존소득기준)	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	100% 이하		① 신청자 본인 및 배우자 모두 주택 등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 ② 혼인관계 : 혼인 중인 경우 ③ 혼인기간 : 혼인 후 7년 이내	① 주민등록등본 등 소명자료에 의한 전산추첨
	배우자가 소득이 없는 경우	120% 이하		④ 혼인관계증명서 등 소명자료 → 가점기준	④ 혼인관계증명서 등 소명자료 → 가점기준
신혼부부 일반공급 (상위소득기준)	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	100%초과~120%이하		⑤ 혼인관계증명서 등 소명자료 → 가점기준	⑤ 혼인관계증명서 등 소명자료 → 가점기준
	배우자가 소득이 없는 경우	120%초과~130%이하		⑥ 혼인관계증명서 등 소명자료 → 가점기준	⑥ 혼인관계증명서 등 소명자료 → 가점기준
	상위 하위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	100%초과~130%이하		⑦ 혼인관계증명서 등 소명자료 → 가점기준	⑦ 혼인관계증명서 등 소명자료 → 가점기준
	상위 하위 모두 소득이 없는 경우	120%초과~140%이하		⑧ 혼인관계증명서 등 소명자료 → 가점기준	⑧ 혼인관계증명서 등 소명자료 → 가점기준

- 기준소득 : 신혼부부 우선공급 기준소득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% 이하, 신혼부부 일반공급 기준소득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%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, 부부 중 1인 소득이 월평균 소득기준 100%초과시 일반공급 2순위로 접수 가능하며 이때 일반공급 2순위 접수 시 일반공급 1순위 접수 불가합니다.
- 상위소득 : 신혼부부 우선공급 기준소득 이하 이면서 일반공급 기준소득 이하 이면 상위소득 이하 주택형에 한하여 신청 가능하며 이때 주택형 생애최초 구입자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20%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.
- 2020.07.29. 개정된 주택공급규칙 관